

8-1. 징계제도 운영현황

2026년

엘에이치이앤에스

징계위원회	구성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인사위원회(일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장: 사장 - 위원: 이사, 외부 전문가 - 간사: 경영담당부서장 ○ 보통인사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장: 경영담당 부서장 - 위원: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2급 이상 직원, 외부 전문가 - 간사: 경영담당부서 팀장
	의결정족수	구성원 2/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징계종류, 효력 및 양정기준		자료 첨부
징계절차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처벌 사유의 확인 및 조사 2. 감사부서장 등의 처분 요구 3. 인사위원회에 처분 심의 요구 4.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징계 대상자가 조합원일 시 조합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명하는 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5. 인사위원회의 처분 의결 및 사장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장은 보고 후 7일 이내 재심의 요구 가능 * 사장은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면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6.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집행 및 기록 7. 징계 대상자가 서면으로 재심 요구 시 재심의 진행
적용대상자		직제규정 제5조에 따른 직원

기준일	2025년 12월 31일	제출일	2026년 4월 30일
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기관공시 담당자

구분	담당자명	부서명	전화번호
----	------	-----	------

작성자	박성록	인사노무팀	055-922-6311
감독자	박효정	경영기획팀	055-922-6302
확인자	박진철	감사실	055-922-6330